

구미시지방세계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폐지이유

「지방세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·개정으로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·운영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」의 폐지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6조(결손처분)
- 2)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1조(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
- 3) 「구미시 시세 기본조례」 제정(2010.12.31)-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「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」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세기본법

제96조(결손처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.

1.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
2.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
3.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
4.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제141조(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
2.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
3. 제140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
4.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
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,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

제8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.

소관 실·과		세 무 과
입 안 자	과 장	이 영 활
	담 당	정 윤 호
	담 당 자	박 영 애 (480-6904)